

현행	개정안
<p><u>임야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. 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, 취득, 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.</u></p> <p>제35조(특별회계의 세입. 세출) 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유재산(공유림 제외)의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 : 그 수입금액의 10%</li> <li>2. 공유임야 매각대, 대부료 : 그 수입금액의 100%</li> <li>3. 국유재산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, 변상금 등 :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0%</li> <li>4. 일반회계 전입금 : 부족재원</li> </ol> <p>② 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 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p> <p>제35조의 2(분수립의 설정) (생략)</p>	<p>(삭제)</p> <p>제35조의 2(분수립의 설정)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준용규정)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<u>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.</u>	(삭 제)
제37조 (생 략)	제35조(현행 제37조와 같음)
제38조 삭 제	
제39조 내지 제62조 (생 략)	제36조 내지 제60조(현행 제39조 내지 제62 조와 같음)

## 서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 에 관한 조례 증 개정 조례안

서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  
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폐기물관리법 제35조”를 “오수,  
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  
조”로 하고, “도시계획구역내”를 “도시계획구  
역안”으로 한다.

(별표)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  
다.

(별표) 가축사육제한구역

읍. 면별	제 한 구 분	제 한 구 역	비 고
대산읍	전부제한구역	상 업 지 역	
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
지곡면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
운산면	전부제한구역	상 업 지 역	
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
해미면	전부제한구역	상 업 지 역	
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므로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별표) 가축사육제한구역</p>	<p>제1조(목적) .....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..... 도시계획 구역안 ..... ..... .....</p> <p>(별표) 가축사육제한구역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읍 면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이 명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제 한 구 역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부 제한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미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읍내리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읍내리 298-6, 242-7번 지까지 연결되는 도로                       2. 읍내리 242-7번지에서 휴암교 옆 143-2번지까지 연결되는 하천 제방                       3. 휴암교 옆 143-2번지에서 면사무소 앞 298-6번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이내구역(시장방향)                 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읍 면	이 명	제 한 구 역	비 고	전 부 제한구역	해미면	읍내리	1. 읍내리 298-6, 242-7번 지까지 연결되는 도로  2. 읍내리 242-7번지에서 휴암교 옆 143-2번지까지 연결되는 하천 제방  3. 휴암교 옆 143-2번지에서 면사무소 앞 298-6번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이내구역(시장방향)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읍, 면별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제 한 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제 한 구 역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산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부제한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 업 지 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부제한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거 지 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곡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부제한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거 지 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산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부제한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 업 지 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부제한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거 지 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미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부제한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 업 지 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부제한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거 지 역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읍, 면별	제 한 구 분	제 한 구 역	비 고	대산읍	전부제한구역	상 업 지 역	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	지곡면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	운산읍	전부제한구역	상 업 지 역	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	해미면	전부제한구역	상 업 지 역	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
구 분	읍 면	이 명	제 한 구 역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 부 제한구역	해미면	읍내리	1. 읍내리 298-6, 242-7번 지까지 연결되는 도로  2. 읍내리 242-7번지에서 휴암교 옆 143-2번지까지 연결되는 하천 제방  3. 휴암교 옆 143-2번지에서 면사무소 앞 298-6번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이내구역(시장방향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읍, 면별	제 한 구 분	제 한 구 역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산읍	전부제한구역	상 업 지 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곡면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산읍	전부제한구역	상 업 지 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미면	전부제한구역	상 업 지 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부제한구역	주 거 지 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구 분	읍 면	이 명	제 한 구 역	비 고					
			99-1, 994-4, 99-2, 99-5, 115, 95-2를 연결한 이내구역						
일 부 제한구역	운산면	용장리	1. 용장리 370-10(운산국교 앞)에서 370-9, 428-7, 371-4, 376-2, 376-1, 389, 372-1, 372-2, 406-1, 406-2, 410, 416-1, 471-2, 471-1, 434, 439-21, 446-2, 428-24, 442-4, 370-10을 연결시킨 선의 내측						

현				행		개		정		안	
구	분	읍	면	이	명	제	한	구	역	비	고
						1. 용장리 442-					
						4, 442-1,					
						463-14, 463					
						-5, 463-6,					
						463-20,					
						490, 485,					
						484, 474-2,					
						474-12,					
						473, 472-1,					
						472-2, 434,					
						439-21, 446					
						-2, 442-4까					
						지 연결시킨					
						선의 내측					

## 서산군모자복지위원회설 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군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  
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“부군수가”를 “가정복지과장

이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중 “(운영세칙)”를 “(운영규칙)”  
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